2022년 10월 28일 제정 2024년 2월 2일 일부개정 2025년 2월 21일 일부개정

# (사)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





# 제 1 장 총 칙

# 제1조 (명칭)

본 회는 "사단법인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"(약칭 대구예총)라 한다.

## 제2조 (소재지)

본 회의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.

# 제3조 (목적)

본 회는 대구광역시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 제4조 (사업)

①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예술분야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
- 2.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
- 3.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- 4. 국내외 예술문화교류사업
- 5. 지역 예술의 발굴, 소개 및 보존사업
- 6.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, 전시회, 토론회 등 개최
- 7. 예술진흥을 위한 교육원 운영 및 정책개발사업
- 8.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
- 9.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
- ②전 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# 제 2 장 회 원

# 제5조 (구성)

- ①본 회의 단체는 '(사)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'의 정회원 단체와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정회원 자격은 각 정회원 단체의 회원규정에 따르며 확인이 필요할 시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.

# 제6조 (특별회원)

- ①본 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단체를 특별회원(특별회원단체)으로 둘 수 있으며, 입회비 및 회비를 받을 수 있다.
- ②특별회원 및 단체는 본 정관 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)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.

# 제7조 (회원단체의 권리)

본 회의 정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- 1. 발의 및 의결권
- 2.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

## 제8조 (회원단체의 의무)

본 회의 정회원단체(정회원 포함)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- 1.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
- 3.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
- 4. 정회원 단체는 정관 및 회원명부 제출(회원변경 시 변경명부 제출)

## 제9조 (징계)

①본 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(회원)에 대하여 징계절차(사실조사 →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

- → 이사회 징계 결의 등)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1.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3. 본 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4.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
- 5.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(회원)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
- 6. 대구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대구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
- ②전 항의 경우, 본 회 회장이 3인 이내로 지명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,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.
-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경 고
- 2. 자격정지
- 3. 제 명
- ④징계 결과 불복 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본 회(이사회)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# 제10조 (포상)

본 회의 회장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.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된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
# 제 3 장 임 원

# 제11조 (임원)

①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1인2. 수석부회장1인3. 부회장3인 이내

4. 이 사 15인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포함)

5. 감 사 2인

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으며(단,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.)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(위원)는 본 정관 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)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.

## 제12조 (임기)

-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부회장 (수석부회장)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당연직 이사(정회원 단체장)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된 때에는 신임단체장이 본회 이사직을 승계한다.
- ②회장,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 제13조 (선출 및 조직)

-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- 1. 본 회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소속 정회원 단체장의 추천 또는 입후보자 소속협회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 또는 직전총회 대위원 1/5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본 회 회장의 권한은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대구예총 회장이 4인 이내로 선임하며 현 단체장, 단체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- 4. 감사는 각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(회장 소속 정회원단체는 불가)
- 5. 본 회 이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정회원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단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정회원 단체는 후임 회장이 그 이사직을 승계한다.
- ②회장은 각 회원단체장 및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또한 대구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,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본 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14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금치산자
- 2. 한정치산자
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명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8.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9.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- 10. 본 회와 유사단체의 회원. 단, 유사단체의 판단은 대구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-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.
-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사퇴한 임원이 사퇴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## 제15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(단, 정관에 따른 이사 임기 만료된 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)

- ①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②본 회의 목적위배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 제16조 (임원의 직무)

임원은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과 회원단체의 권익 옹호와 발전을 위하여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며, 기타 제 부담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수석·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,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-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.
- ④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# 제 4 장 총 회

# 제17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정회원단체별 10명으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(현 임원은 소속단체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된다.) ①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.

# 제18조 (구분 및 소집)

-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년 1회,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(보선)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. 총회소집은 개시 7일 전까지 문서(모바일)로 대의원에게 통보한다.
- ②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- 3. 본 정관 제16조 4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# 제19조 (부의사항)

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임원의 개선 및 해임과 보선에 관한 사항
- ②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③사업 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④해산,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- ⑤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#### 제20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본 회 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,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

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,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 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본 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다.
- 1.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본 조 제①항 1호·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,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 제22조 (정족수)

- ①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.
-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.

# 제 5 장 이 사 회

#### 제23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
# 제24조(이사회 구분 및 소집)

-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(모바일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.

# 제25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이사회는 본 정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2. 본 정관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대구예총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본 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 제26조 (부의사항)

-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
- 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- 3. 운영내규의 규정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 제27조 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
- ①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

## 제28조 (정족수)

본회의 이사회는 재적대의원(재적이사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(출석이사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- ①감사는 의결권 없음
- ②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.

# 제 6 장 재 정

# 제29조 (재산의 구분)

- ①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# 제30조 (세입 등)

- ①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- 1. 회원단체의 회비
- 2. 보조금 또는 지원금
- 3. 찬조금
- 4. 사업 수익금
- 5. 기타 수입금
- ②본 회의 회계연도는 주무관청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③예산편성

본 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(단,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당회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한다.)

④결산

본 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 제31조 (감 사)

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다.

# 제 7 장 사 무 처

## 제32조 (설치)

- ①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②사무처 조직 및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후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.

# 제33조 (조직 및 운영)

- ①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본 회 사무처 조직 및 운영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.
- ③사무처장은 본 회와 정회원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④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, 조직, 인사, 보수, 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조직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.

# 제34조 (보수)

- ①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# 제 8 장 보 칙

# 제35조 (정관변경)

- ①본 회의 '정관'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- ②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③본 조 제①항 정관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.
- 1. 정관변경 사유서
- 2. 개정할 정관
- 3. 신·구 조문 대비표

#### 제36조 (인계인수)

본 회는 정기총회(임원 개·보선)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①전임 회장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회장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# 제37조 (법인해산)

- ①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# 제38조 (규정제정)

본 회 정관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 규정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.

# 부 칙

# 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단